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 4.28.(목)

보도자료

2011년 4월 28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750-277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750-2771) eyhuh@kcc.go.kr

위치기반사업자 관련 경찰수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의 모바일 광고업체를 적발한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앱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보호교육(연2회)을 실시해 왔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LBS 산업육성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방통위의 구체적인 향후조치 사항이다.

o 앱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 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처분** 추진('11. 7)

-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의 수가 수천개에 달하고 위치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일정 계도기간 필요

o 한국인터넷진흥원, LBS 산업협의회와 함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앱 사업자에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

-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배포(별첨)

- 청년창업자, 벤처기업 등 위치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정보도 제공

o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보호 인증 제도** 도입('11. 10)

- 앱스토어 등록전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이용 등의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

o **旣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에서 **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 과거 통신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를 중심으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스마트폰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인 앱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증가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첨부 >

위치기반 모바일 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모바일 앱 사업자가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하는 정보, 서비스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o 고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URL을 입력하여 접속해야 하거나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의 소재지 등에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는 이용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음

o 고지내용은 앱 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목록(이용자의 신상정보, ID/PW는 물론 휴대폰 번호, MAC 주소,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등) 및 그 목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o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단계에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명기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화면에 동의 여부를 단순 고지한 것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가 동의를 위한 별도의 버튼 등을 선택한 것만이 동의임

o 이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o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는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수집 및 이용 목적 안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수집 한 이후로 추가 이용 목적이 발생했거나 이용 목적이 바뀌면 이용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것이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치정보, 개인정보 보호관련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주요 권고>

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해설서

- 사업자는 서버에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접근 제어 장치 및 전송, 저장시 DB에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제공 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o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o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3자 제공 시점에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트래킹 서비스 등 위치 궤적을 그려야 하는 서비스는 이용 기간이 경과, 서비스의 해지 등이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o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한 ①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②이용자에게서 동의를 얻은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③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이용목적의 달성”에는 서비스의 해지, 회원의 탈퇴, 이벤트의 종료 등이 해당합니다.

□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o 스마트폰 OS 기반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 서비스 중 이용자 또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전송하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합니다.

o 모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이용약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